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 우 진 의원)

의 안 번 호	25-163
------------	--------

발의년월일 : 2025. 11. 14.

발의자 : 채우진,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장정희,
최은하 의원(10인)

1. 개정이유

-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표현 등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여, 구민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청소년 보호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비용청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정비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집회기간 외 게시되거나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해 구청장이 철거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제5호).

- 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등을 구청장이 즉시 제거하고, 그 비용을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 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한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3.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9조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조, 제19조
- 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의3, 제28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입법예고: 2025. 11. 6. ~ 11.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 ①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집회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수막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현수막
2. 벽보
3. 전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제3조의2(집회현수막) ①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p> <p>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집회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신 설>

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5.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보호 ·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수막에 관
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
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
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
등에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광고물 중 불법 광고물을 수
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
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 지
급기준 ·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현수막

2. 벽보

3. 전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광고물

【관 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72호, 2025. 4. 1., 타법개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

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8. (이하 생략)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 ⑨ (이하 생략)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 (생략)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제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 7. (생략)
8.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

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선전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방법과 제한 장소, 그 밖에 광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3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8. (생략)

② ~ ⑤ (이하 생략)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시장·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박준혁
연락처	02-3153-9454